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원형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207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6.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제안사유

- 택시사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원가부담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업계 부담이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한시적 조례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부칙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2024. 10.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1) 택시정책과-16298호(2021.11.1.)

- '12년 이후 카드수수료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택시요금의 카드결제율이 85% 이상 카드 활성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소액결제에 대한 지원은 필요
 - 소액 카드결제 시 하차시간 단축, 현금 미휴대로 편리 및 범죄예방 효과
- 개인택시의 경우 '23.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카드수수료율이 0.77%로 매우 낮은 등 카드수수료 지원 설득력이 약함
-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 수입 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었고, 카드수수료율이 1.6%로 높고 카드 결제율의 증가로 카드결제수수료 총액의 증가, 운전원 감소 등 경영난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해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이하 ‘현행 조례’)²⁾를 그대로 반영하되 지원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택시이용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 12월 조례 제정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5차례(2013년³⁾, 2015년⁴⁾, 2017년⁵⁾, 2019년⁶⁾,

2)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06호, 2011. 12. 29., 제정]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2013.10.4. 일부개정·시행

4) 2015.10.8. 일부개정·시행

5) 2017.12.28. 일부개정·시행

2021년⁷⁾)에 걸쳐 지원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하였고 '2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지원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았음

- 서울시가 카드결제율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행 조례가 시행된 2012년에 50.3%이던 카드결제율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86.7%까지 높아진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11년부터 '22년까지 매년 35억원에서 79억원의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바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법인택시는 주·야간 동일하게 1만원 이하로, 개인택시는 주간⁸⁾ 5천원 이하, 야간⁹⁾ 8천원 이하의 교통카드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현재는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지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카드결제율 (%)	44.7	50.3	58.8	59.2	62.2	67.4	70.2	73.6	75.5	83.4	85.2	85.6	85.1	86.7
예산액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3,550	5,690	5,900	-	-
지급액	미지원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5,650	2,946	4,210	4,857	-	-
지급대상	미지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	-

6) 2019.9.26. 일부개정·시행

7) 2023.12.30. 일부개정·시행

8) 주간시간대 : 08시~20시(12시간)

9) 야간시간대 : 20시~익일08시(12시간)

※ 법인·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현황(법인 22년, 개인 21년 기준)

사 업 자	구 분	대상요금액	지원범위
법인택시	주 간	10천원 이하	선불카드 :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 결제금의 1.6% 지원
	야 간	10천원 이하	
개인택시	주 간	5천원 이하	선불카드 : 결제금의 1.5% 지원 후불카드 : 결제금의 1.1% 지원
	야 간	8천원 이하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최근 카드결제율이 86.7%에 이를 만큼 카드사용이 정착되어 예산지원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고, 개인택시의 경우 '19.2월, '23.2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가 개선되어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코로나19의 영향,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의 지속적 확충과 시설개선 및 플랫폼 택시 도입 영향 등으로 법인택시 업계의 영업수입이 크지 않고 현행 조례의 일몰 기한이 지나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 활성화에 일부나마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 택시(법인/개인) 운송수입금(최근 5년)¹⁰⁾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9월
운송 수입금	개인	15,109억원	15,841억원	19,413억원	22,997억원	17,554억원
	법인	11,878억원	10,292억원	11,019억원	12,369억원	9,276억원

10) 서울시 내부자료

-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지원규모가 달라지고 있으나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12년 7월 이후,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개인은 '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은 '19년 이후 변동이 없어 카드수수료 지원시 선불카드 수수료와 법인택시 후불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율 변화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선불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후불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1.7%	법인 1.6% 개인 1.5%		법인 1.6% 개인 1.1%			법인 1.6% 개인 0.77%		

- 한편 서울시는 그간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수업체에 지급하였지만 택시운수종사자 처우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19년과 23년 2차례 택시요금 인상시 카드수수료를 요금인상에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